

생산등록번호	
등 록 일	
결 재 일	
공 개 구 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				
협 조 자					

2026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



경 제 과

[일자리육성팀]

2026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

1. 주요내용

□ 사업목적

- 저소득층·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¹⁾에게 한시적·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조 및 근로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

구 분	2025년	2026년	비고
신청자격	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	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	직접일자리 사업 합동지침 기준 준용
근무시간	○ 만18세~만39세 : 일8시간(주40시간) ○ 만40세~만64세 : 일5시간(주25시간) ○ 만65세이상 : 일3시간(주15시간)	○ 만18세~만39세 : 일8시간(주40시간) ○ 만40세~만64세 : 일5시간(주25시간) ○ 만65세이상 : 일3시간(주15시간)	
최저시급	10,030원	10,320원	+290원
부대경비	5,000원	5,000원	교통비, 간식비
사업기간	○ 1단계 : 1. 13. ~ 4. 11. ○ 2단계 : 4. 28. ~ 7. 25. ○ 3단계 : 9. 15. ~12. 12.	○ 1단계 : 1. 12. ~ 4. 10. ○ 2단계 : 4. 27. ~ 7. 24. ○ 3단계 : 9. 7. ~12. 4.	
가구소득	기준중위소득 70%이하	기준중위소득 70%이하	일모아 시스템 조회

1) 학력·경력·의 부족, 고령화, 육체적·정신적 장애, 실업의 장기화,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

2. 사업개요

□ 사업방침

- 2026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,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 지침, 공공근로사업 시행 지침을 적용
- 자치단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각 부서별 우선 사업 추진.

□ 근거법령

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

□ 단계별 선발계획

(단위: 천원, 명)

단계별	접수기간	사업기간	사업비	배치인원*
계		'26. 1. 12. ~ 12. 11.	3,325,000	738
1단계	'25. 12. 1. ~12. 12.	'26. 1. 12. ~ 4. 10.	1,108,300	246
2단계	'26. 3. 16. ~ 3. 27.	'26. 4. 27. ~ 7. 24.	1,108,300	246
3단계	'26. 7. 27. ~ 8. 7.	'26. 9. 7. ~ 12. 4.	1,108,400	246

※ 경제과-(64050) 관련, 부서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배치 인원 결정

※ '26년 국도비 지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가 편성 시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변경될 수 있음

※ 단계별 사업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업 시작

3. 신청자 접수

□ 참여자격

- 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
 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 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

○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

-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
-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(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)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-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
-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(0.5ha기준)
-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배우자 및 자녀
-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
- 직전 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 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
- 직전 단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반복 참여자(최근 3년간 2년 이상 참가한 자)

* 재정지원일자리사업 :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

*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

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장애인)

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·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

* 단, 모집인원 부족 등 특수한 경우는 탄력적 적용 가능

-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(토지 · 건축물 · 주택 ·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

* 가구단위는 ‘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’ 기준

-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- 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

○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

- 고교·대학교 졸업 예정자,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야간 대학 재학생

- 6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,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,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(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)
- 0.5ha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(임차농지는 1/2로 계산), 0.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(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)

□ 신청 구비서류

-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접수처에 비치)
-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(신청자 및 세대원/ 접수처에 비치)
-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
- 기타 증빙 서류
 -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각종 자격증, 휴학증명서 등

□ 접수 및 처리 절차

- 주소지 신청 원칙
 - 이중 신청, 참여 자격의 적격 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(주민등록 소재지)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원칙
- 사업 참여 신청서를 읍·면·동의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,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매일 접수 대장을 관리
- 읍·면·동 「신청자격 심사실명제」 실시
 - 신청자 확인 : 읍·면·동장
 - * 신청서의 뒷면에 「신청자 확인」 양식을 첨부하고, 책임성 있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 ⇨ [서식2]
 - 조사방법 : 읍·면·동 공부 대조
 - * 재산 : 주택, 건축물, 토지 등의 과표 표준액(지방세 자료로 조회)
 -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장애인 여부 : 사회복지담당 경유
 - * 0.5ha 초과 농지 경작자 : 농지원부 확인
 - * 기타 필요한 사항 필요시 조회하여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
- 읍·면·동은 접수한 신청서를 시로 송부

4. 대상자 선발

□ 사업별 대상자

- DB구축 지원사업 : 기록물, 지적, 물품 자료 등 각종 행정 전산화 사업 등
 - PC관련 자격증 소지자, 워드 가능자, 전산 관련 학과 이수자 우대
- 환경 정화 사업 : 공원, 관광지, 하천, 도로변 쓰레기수거 및 꽃길 조성 등
 - 신체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
- 서비스 지원 사업 : 현황 조사 지원, 각종 도우미 사업 등 공공기관 지원 업무
 - 신체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
- 기타 사업 : 부서 자체 필요 사업 등
 - 사업별 자격요건 필요시 우대

□ 선발 고려요소

- 연령 : 접수 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
 - 재산 상황 :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
 - 주민등록상의 세대 기준(동거인 제외)으로 판단하며 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
- * 단, 중소도시 주택 가격, 거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가액에서 5,300만원 기본공제
- (여성)세대주 · 부양가족
 - 세대주 :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원칙이나,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시 사실관계 적용 가능
 - 부양가족 :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, 부양가족 중 실제 소득이 있는 자(회사원, 공무원, 직장 보험 가입자 등) 동거인은 제외
 - 실업기간 : 실업 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초 구직 등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 (공공근로사업 참여 기간은 실업 기간에 미포함)
 - 취업취약계층 : 장애인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 가장,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·지원 대상자
 -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“복지카드”를 소지한 자

- 사업 참여 여부 : 직전(直前)단계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의 분류
 - 전(前)단계 마지막 달에 신규로 참여한 자,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전(前)단계에 1월 이하 참여한 자는 전(前)단계 참여자로 보지 않음
- 가구소득 : “가구의 소득 합산액“이 소득합산액 기준표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
- 자격 또는 경력·능력 :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
-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: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배제
-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 기간
 - 실업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,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사업 참여 배제
 -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
- 연금 등 수혜자
 -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 참여 당연 배제
 - * 단,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
 - 각종 연금 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(배우자 포함)는 정기 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
 - *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공무원 연금 등의 수혜 여부 확인
-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
 - 사업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 소득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(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)
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 소득 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

□ 대상자선발 제한

-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 불허
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

- 3D 업종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2단계 동안 참여 제한
- 중도 포기자 중 질병, 취업, 직업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사업 참여 가능
- 이 외에 선발 고려 요소에 적합하지 않은 자

□ 선발 절차

- 고려 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합산 점수 순위에 의한 선발 ⇨ 일모아시스템
-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순위 희망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,
 - 희망 사업이 없거나 특정 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·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, 주소, 사업 참여 이력, 장애 여부,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
- 사업별 신청자가 부족할 시 본인과 협의 후 사업장 재배치
- 선발 고려 요소에 의거 예산 범위 내 배치하고, 잔여 인원은 대기자로 분류 후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치

5. 임금 및 근로조건

□ 임금조건

구분	1일 임금단가	비고
만18세~만39세	10,320원 × 8시간 = 82,560원	○ 부대경비 1일 : 5,000원 ○ 주·월차 수당 지급 ○ '26년 최저임금 : 시급 10,320원
만40세~만64세	10,320원 × 5시간 = 51,600원	
만65세 이상	10,320원 × 3시간 = 30,960원	

□ 임금의 지급방식

- 월급(다음달 10일 이내)형태로 개인별 본인 명의 통장 입금, 임금 명세서 교부

□ 근무시간

- 만18세~만39세 :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40시간 이내, 주5일 근무
- 만40세~만64세 : 1일 5시간(09:00~15:00), 주25시간이내, 주5일 근무
- 만65세이상 : 1일 3시간(09:00~12:00), 주15시간 이내, 주5일 근무
- 정상 근무 시간의 조정
 -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(월~금요일 중 1일 또는

2일)을 휴일로 지정 후 토·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

※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, 평일 임금 적용

□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

- 사업관리 부서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 요인을 사전 예방
 -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

6. 사업의 지도·감독

□ 작업장 지도·감독

- 근로자 출석 여부 확인은 작업 시작 전에 실시
- 사업장별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·감독 실시
-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: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*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

*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, 근로 능력 미달자 등

- 불이익 금지 : 농촌지역의 일용근로자가 농번기 일손 참여를 위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는 무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, 사전에 적극 안내

□ 안전관리·점검 및 교육

- 안전 점검 :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 점검 강화로 위험 요소 사전 제거 (예,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 위험물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)

〈 시기별 안전관리 · 점검 방법 〉

시기	점검내용	점검자
작업시작 전	○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 ○ 장비, 설비의 이상 유무 ○ 작업장 주위 유해·위험요소 확인 ○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○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○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감독자
작업중	○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-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·지도 -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○ 작업장 주위 유해·위험요소 확인 ○ 도로 주변 작업 시 차량 유도자 배치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감독자
작업완료 후	○ 작업장 내 순회점검 -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○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○ 공동 작업용 공구·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감독자

- **안전조치** : 공공근로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
- **안전교육**
 - 단계별 사업장 관리감독자(공공근로 배치부서 담당팀장 등)를 지정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
 - 사업장 관리감독자(공공근로 배치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)의 임무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
 - ⇒ [참고2]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·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
 - 일일 안전관리 ·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⇒ [서식11] 현장작업·교육일지
 -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
 - 작업투입 전 및 작업 중 작업복·보호구 착용지도
 -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
 - 작업장 순회점검·지도

-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

⇒ [참고1]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

-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, [서식15]안전사고관리대장 작성
-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(현장)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

○ 안전물품 구입

- 식염포도당, 쿨스카프, 팔토시, 핫팩 등

*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

- 소요예산 : 10,000천원

○ 사업담당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각각 조치하여야 함

-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“산업재해조사표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

*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

7. 행정사항

☐ 사업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 자체 발굴 노력

☐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준용하여 추진

→ '25년 12월중 시달 예정

☐ 공공근로사업 배치부서 인원관리 및 사업추진 철저

붙임 1. [서식1]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
2. [별지1]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

3. [별지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

4. [서식2] 신청자 확인서 1부.

5. [서식3]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1부.

6. [서식4]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.

7. [서식5]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.

8. [서식6] 무급휴직자 확인서류(사업장용) 1부.

9. [서식7] 무급휴직자 확인서류(신청자용) 1부.
10. [서식8] 무급휴직자 확인서류(재직확인서) 1부.
11. [서식9] 표준근로계약서 1부.
12. [서식10] 공공근로사업 관리카드 1부.
13. [서식11] 공공근로사업 현장작업·교육일지 1부.
14. [서식12]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명부 1부.
15. [서식13] 공공근로사업 사용증명서(근무확인서) 1부.
16. [서식14]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1부.
17. [서식15]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 1부.
18. [서식16]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
19. [참고1]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1부.
20. [참고2]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·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 끝.